
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|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(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)를, 과세기준일 현재</u></p> | <p><u>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</u></p> <p><u>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외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[수도권(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]를,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[수도권(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]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</u></p> |
| |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data-bbox="858 1677 1445 1857"><u>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</u> <li data-bbox="858 1879 1445 1985"><u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 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</u> |